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22 선고 2022가단20003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한정후경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세현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6. 17.

판 결 선 고 2022. 7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5. 6. 접수 제9570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허명욱

별지